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김성기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안 제3조)

나.. 해설사 직무(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준수하여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안 제6조 ~ 제7조)

마. 해설사 포상(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위 법령을 중복되는 내용 없이 간결하게 준용하여
우리 군 지역 실정에 걸맞게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입법례: 전국 98개 지자체, 도 내 6개 시·군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